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51호

나. 발 의 자 : 최민규 의원 외 63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국어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 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명칭의 지적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 실태 조사에서 외래어 등의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 제공 <다듬은 말>로 순화 또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계속 제기되었음.
- 서울시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서울시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하고,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 나.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규정과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 다.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4항제3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공문서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를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어 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지정하여 국어 사용 시책 수립 등을 통해 서울시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외래어 등의 한글화 대체 규정(안 제13조제2항제3호)

- 개정안은 공문서에 불필요하게 사용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등을 한글로 순화된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사업·행사의 명칭과 홍보자료의 문구에 사용되는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도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어와 외국 문자 사용 관련 지적이 449건으로 총 지적 건수 644건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외래어 등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다듬은 말’로 순화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2022년도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지적 건수 >

(단위 : 건)

구분	정책·사업·행사 명칭		홍보 문구			
			용이성 기준		정확성 기준	
	외국어	외국문자	외국어	외국문자	표기 (어문규범)	표현 (어법/어휘)
지적 사례 (총 644건)	145		304		195	
	127	18	246	58	171	24

-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사용되는 명칭과 문구 등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경우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 이전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과 절차가 요구 되는 상황임.
- 따라서 그동안 실시해 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후적 논의와 내부 방침을 일부 수정해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적 검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국어책임관 ·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 신설(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 개정안은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정 대상자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 추진,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 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어책임관을 두어야 하며, 국어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공문서, 보도자료, 홍보물 등에 알기 쉽고 올바른 국어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소속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 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 이에 서울시는 「국어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2015년부터 5년 단위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실시 중인 제2기 기본계획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3개 목표를 정하고 7개 분야 16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 국어책임관은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어책임관 업무평가에서 2022년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서울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정책 >

추진 목표	추진 분야(7) 및 과제(16)	추진 부서
1.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1] 공공언어의 대시민 소통성 제고	
	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순화어 선정	홍 보 담 당 관
	2.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	법 무 담 당 관
	[2]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역량 강화	
	3. 공공언어 교육 과정 운영	인 재 개 발 원
	4.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홍 보 담 당 관
	5.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점검	홍 보 담 당 관
	6. 바른 공문서 작성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정보공개담당관
	[3]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조직 협력	
	7. 공공언어 개선 기관평가 운영	홍 보 담 당 관
	8. 국어(한글)단체, 국어문화원, 시·구·중앙정부 협력	홍 보 담 당 관
2.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환경의 개선	[4] 국어 사용 소외계층의 언어 소통 불편 최소화	
	9.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어교육	가족다문화담당관
	10.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5]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정비	
	11.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 (격년)	홍 보 담 당 관
3. 아름다운 국어(한글)의 가치를 보전 및 홍보	12. 서울 좋은 간판 공모전 운영	도시경관담당관
	[6] 시민과 함께 하는 국어사랑 한글사랑	
	13. 서울시민대학 국어 강좌 운영	서울시민대학
	14. 한글날 기념 한글주간행사	홍 보 담 당 관
	[7] 국어(한글)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	
	15. 세종이야기 운영	세종문화회관
	16. 한글가온길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관 광 산 업 과

※ 서울시 총 11개 부서 및 산하 기관에서 협력하여 추진

- 또한 개정안에서 국어책임관의 임무로 규정한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는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 작성

원칙을 국어책임관이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국어 사용 시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사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의안번호
105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2023. 8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를 다수 사용하여 해당 표현을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지속 제기됨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와 관련하여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도록 규정함 ○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규정과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추진경과 ○ 의원발의(2023.8.14.)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팀장	정효진(☎2133-6438)	담당	이지아(☎2133-6440)